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28(화) 10:00

#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1호
- 나. 제 출 자 : 운영회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 2. 제안이유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2023. 11. 22.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 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4)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성 및 맨발걷기 문화 확산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3호, 2023. 3. 28., 일부개정]

- 제6조의 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